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891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3
2.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 신설(송석준의원안, 송재봉의원안)	15

I. 개요

1.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89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송석준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11. 4.
- (3) 회 부 일 : 2025. 11.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관련 기업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할 경우 기업 규모, 기술 유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에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세액공제 혜택만으로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미국의 경우에는 미공제 세액공제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외입법례를 참고하여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납부세액 부족 또는 최저한세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는 ① 일반 R&D 세액공제와 ②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③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로 구분되어 있음.

일반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유리한 계산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당기분 방식’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8~20%,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증가분 방식’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대기업은 25%,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당기분 방식’이 적용되는데,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신성장·원천기술¹⁾은 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생략)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20~35%를 공제하고,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30~40%를 공제함.

국가전략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하고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²⁾로서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이 10%p 높은 수준이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R&D 비용의 30~45%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40~50%를 공제받음.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구조가 도입되어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일반) 또는 3년(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동안은 일반 중견기업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추가 ^{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20 ¹⁾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²⁾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³⁾	40	최대 10

주)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경제활력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제1호 생략)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10개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신설되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전후 비교]

종 전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며, 세액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인데 토지와 건축물 등은 제외됨. 또한, 중고품, 임대용 자산 및 리스에 의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과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임. ‘추가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됨.

일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이 대기업 1%·중견기업 5%~7.5%·중소기업 10%이며,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3%·중견기업 6%~9%·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15%·중견기업 15%~20%·중소기업 25%임.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구조가 도입되어 유예기간 종료 이후 3년 동안은 일반 중견기업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5년 3월 세법개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5%p 상향된 기본공제율이 적용됨.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4) (~3년)25%, (4년~)20%

당초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

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법률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바이오의약품,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되었음³⁾.

3) 바이오의약품: 2023년 12월 세법개정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 2025년 3월 세법개정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술 현황]

구분	분야	기술
미래형자동차	자율 주행차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 탑승자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등
	전기 구동차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등
지능정보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기술, 언어이해 기술 등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IoT 네트워크 기술, IoT 플랫폼 기술 등
	클라우드(Cloud)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등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 수집·정제·저장 및 처리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등
	착용형 스마트기기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관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유연한 양·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제조기술 등
	IT 융합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등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등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등
	스마트 물류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등
차세대소프트웨어 (SW) 및 보안	기반 소프트웨어(SW)	융합서비스·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등
	융합보안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등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등
	문화콘텐츠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등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제조 기술 등
	반도체 등 소재·부품	포토리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등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기능개선 및 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등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등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차세대 방송통신	5세대(5G) 및 6세대 (6G)이동통신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등
	UHD (Ultra-High Definition)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등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의약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등
	의료기기·헬스케어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등
	바이오 농수산·식품	비가열 및 고온·고압 전처리 기술 등
	바이오 화학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등
에너지·환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등
	발전시스템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등
	원자력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등
	오염방지·자원순환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등

구분	분야	기술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초경량 금속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등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등
	구리합금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제조기술 등
	특수강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등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가공 기술 등
	희소금속·소재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등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고정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등
	안전로봇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등
	의료 및 생활 로봇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등
	로봇공통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등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등
	우주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첨단 소재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등
	첨단 부품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제조 기술 등
	첨단 장비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제조기술 등
탄소중립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수소	부생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산업공정	합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등
	에너지효율·수송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등
방위산업	방산장비	추진체계 기술 등
	전투지원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25. 11. 28. 개정)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 현황]

분야	기술
반도체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제조기술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이하) 기술(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기술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및 전력관리 반도체[BCDMOS(Bipolar-CMOS-DMOS), UHV(Ultra High Voltage), 고전압 아날로그 IC(Integrated Circuit), PMIC(Power Management IC)] 설계·제조기술(0.35 μ m이하)
	차세대 디지털기기·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포토리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파운드리용 IP 설계 및 검증 기술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분야	기술
백신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친환경 QD(Quantum Dot)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마이크로LED 에피(Epi)·전사·접합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수소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압축·저장·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분야	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에이전트 인공지능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인공지능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2025. 11. 28. 개정)

□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조세지출은 모두 2024년에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3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2024년 기업 결손 발생으로 공제액이 이월된 것에 기인함. 다만, 기업 실적 회복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공제액 이월 등을 고려할 때 2025년에는 다시 조세지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⁴⁾

R&D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23년 4조 6,302억원에서 2024년 2조 9,57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 및 2026년에는 다시 4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910	954	1,057	1,081	1,015	951	990
법인세	26,430	26,342	36,173	45,221	28,560	40,522	42,964
합 계	27,340	27,296	37,231	46,302	29,575	41,473	43,954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은 2023년 2조 799억원에서 2024년 1조

4)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7,693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 및 2026년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217	491	810	1,036	1,269	1,477	1,505
법인세	6,009	12,969	21,187	19,764	16,424	24,204	28,571
합 계	6,226	13,459	21,997	20,799	17,693	25,681	30,076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024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0,163개가 1조 3,398억 3,200만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584개가 1조 5,161억 3,200만원을 신고했음.

[2024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4,073	16,914	1	0
20억원 이하	5,980	47,225	3	98
50억원 이하	11,292	172,356	8	218
100억원 이하	8,110	220,769	15	424
200억원 이하	5,437	251,052	40	2,444
300억원 이하	2,052	153,812	46	2,526
500억원 이하	1,754	182,008	76	6,914
1,000억원 이하	1,173	199,823	164	24,890
5,000억원 이하	292	95,873	846	264,524
5,000억원 초과	0	0	385	1,214,094
합계	40,163	1,339,832	1,584	1,516,132

자료: 국세통계포털

2024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10,375개가 4,484억 5,400만 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899개가 1조 1,036억 2,000만 원을 신고했음.

[2024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1,223	2,212	4	166
20억원 이하	1,094	4,481	2	27
50억원 이하	1,979	17,187	11	258
100억원 이하	1,717	34,593	34	715
200억원 이하	1,724	64,686	70	2,733
300억원 이하	817	51,818	69	3,603
500억원 이하	908	89,515	126	7,554
1,000억원 이하	708	115,518	241	22,376
5,000억원 이하	205	68,443	899	230,499
5,000억원 초과	0	0	443	835,687
합계	10,375	448,454	1,899	1,103,620

자료: 국세통계포털

2.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 신설(송석준의원안, 송재봉의원안)

현 행	송석준의원안	송재봉의원안
<신 설>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 등에 대한 환급 특례 및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신설(안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신설) ○ 대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①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② 법인세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할 경우 ○ 내용: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 또는 제3자 양도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총당과 환급) 준용 ○ 한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 ○ 사후관리: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환급세액상당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 납부 ○ 적용기한: 없음 ○ 세액공제 이월공제 미적용 ○ 시행일: 2027. 1. 1.	□ 이차전지산업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및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신설(안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신설) ○ 대상: 이차전지 완제품, 부품, 소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①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② 법인세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할 경우 ○ 내용: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 또는 제3자 양도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총당과 환급) 준용 ○ 한도: 없음 ○ 사후관리: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환급세액상당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 납부 ○ 적용기한: 2029. 12. 31. ○ 세액공제 이월공제 미적용 ○ 시행일: 2026. 1. 1.

현 행	송석준의원안	송재봉의원안
	○ 적용례: 국가전략기술의 지정시점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정규정 적용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송석준의원안 2025. 11. 4. 발의(의안번호 13891), 송재봉의원안 2025. 12. 29. 발의(의안번호 15656)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직접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대해 사후관리 규정을 두려는 것임.

송석준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송재봉의원안은 이차전지 완제품, 부품, 소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라 공제 받을 세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송석준의원안은 환급세액 한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로 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기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 송재봉의원안은 환급세액 한도는 설정하지 않고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규정함.

- 현행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⁵⁾

세액공제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실제 이익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최저한세의 적용⁶⁾으로 투자세액공제를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각국은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기

5) 대한상공회의소,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 2023.7.24.

6) 최저한세는 법인의 경우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이 적용대상이며, 부담하는 법인세는 다음 중 큰 금액임.

①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 × 17%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2%,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 중소기업은 7%*)

* 중소기업 졸업 이후 3년 이내까지는 8%, 그 다음 2년은 9%

② 각종 감면 후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 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 산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에 보조금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을 2022년 8월에 제정하였음.

여기에는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기관, 비영리기관 등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던 세액공제의 직접환급(Elective Pay)과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Transferability)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됨.⁷⁾

직접환급은 첨단 제조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Clean Hydrogen Production Credit), 탄소포집 및 제거 세액공제(Carbon Oxide Sequestration Credit) 등 3개 세액공제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고, 양도는 대체연료차량 충전시설 세액공제(Alternative Fuel Vehicle Refueling Property Credit), 재생에너지 생산 세액공제(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Credit) 등 12개 세액공제에 대해 적용됨.

직접환급이 선택가능한 3개 세액공제는 직접환급 대신 양도도 선택가능함.

7) IRA Title 1, part8, SEC. 13801. Elective payment for energy property and electricity produced from certain renewable resources, etc.에서 규정하고 있음.

[환급 또는 양도할 수 있는 에너지 세액공제 내역]

구분	직접환급	양도
대체연료차량 충전시설 세액공제(Section 30C)		○
재생에너지 생산 세액공제(Section 45)		○
탄소포집 및 제거 세액공제(Section 45Q)	○	○
무공해 원자력발전 생산 세액공제(Section 45U)		○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Section 45V)	○	○
상업용차량 세액공제(Section 45W)		○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Section 45X)	○	○
청정전기 생산 세액공제(Section 45Y)		○
청정연료 생산 세액공제(Section 45Z)		○
에너지 투자 세액공제(Section 48)		○
대체에너지 투자 세액공제(Section 48C)		○
청정전기 투자 세액공제(Section 48E)		○

자료: 조세재정연구원 「미국 - 에너지 세액공제 및 글로벌 최저한세 상호관계 검토」

[직접환급이 적용되는 IRA 상 세액공제 세부내용]

구분	내용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 (Section 45X)	- 미국, 미국령에 의해 생산되는 청정에너지 기술구성요소의 생산에 대해 세금공제 - 적합한 구성요소에는 태양광 부품, 풍력터빈 및 해상풍력 부품, 인버터, 배터리부품, 이러한 구성요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광물이 포함 - 배터리 및 태양광은 2032년말, 핵심광물은 2033년말, 풍력은 2027년말 혜택종료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Section 45V)	- 수소 1kg당 CO2 배출량이 4kg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단계 청정수소 생산인센티브 - 프로젝트 전과정(life-cycle)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배출량이적을수록 많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 - 수소(H2) kg당 단계별로 0.12, 0.15, 0.2, 0.6달러(최대0.6, 0.75, 1, 3달러)의 생산 세액공제가 적용 - 새로운 프로젝트는 2033년까지 건설을 시작해야함
탄소포집 및 제거 세액공제 (Section 45Q)	-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활용(Utilized)과 저장(Stored)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톤당 60달러, 85달러로 적용 - 2032년까지 지원

자료: 삼성증권, 외교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CCUS 지원 확대 동향 자료」, 외교부 「경제안보 Review 25-13호」 등 재구성

기업 입장에서는 공제가능 세액 전액을 돌려주는 직접환급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양도는 직접환급이 허용되지 않는 세액 공제 부분 또는 직접환급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2022년 6월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과시켰음. 이를 통해 마련된 첨단제조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반도체 관련 첨단제조시설에 대한 적격 투자⁸⁾의 35%⁹⁾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익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신 직접환급을 통해 현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음.¹⁰⁾

또한, 캐나다는 청정수소 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15%~40% 공제율이 적용되고 세액의 환급이 가능함.¹¹⁾

□ 개정안은 손실 발생 또는 최저한세 등으로 세제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

8) 첨단제조시설은 1차적 목적이 반도체나 반도체 제조 장비의 제조 시설을 의미하고, 적격투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가동을 시작한 적격 자산 중 첨단제조시설의 일부가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함. 적격 자산은 납세자가 건설하여 첨단제조시설 작동에 필수적인 유형의 자산을 의미하며, 사무시설, 관리 업무 또는 제조와 무관한 다른 건물 등은 해당되지 않음.

9) 당초 25%였으나 2025년 7월 35%로 상향조정되었음(2025. 12. 31. 이후 가동되는 제조시설부터 적용).

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의 국가전략적 가치 제고를 위한 R&D 조세제도 개선 방안」, 2023. 11.

11) To support and accelerate clean electricity investment in Canada Budget 2023 proposes to introduce a 15 percent refundable tax credit for eligible investments in: ① Non-emitting electricity generation systems, ② Abated natural gas-fired electricity generation, ③ Stationary electricity storage systems that do not use fossil fuels in operation, ④ Equipment for transmission of electricity between provinces and territories. (A Made-In-Canada Plan: Affordable Energy, Good Jobs, and a Growing Clean Economy, 2023. 3. 28, p.79)

구개발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음.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적극적인 투자에도 손실이 발생하거나 최저한세 등을 적용받는 기업은 세액공제의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하여 후속 투자를 위한 재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의 지연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특히 기업의 손실이 경쟁력 부족으로 발생했다면, 경쟁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직접환급 및 양도 제도를 도입하여 완화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환급·양도 가능 제도에 대해 필요하다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이 86.7%인 반면, 제도를 도입하여도 투자를 증가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87.2%로 나타나,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불분명함.

둘째, 손실발생 및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액공제의 혜택을 해당연도에 온전히 다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최대 10년에 걸쳐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추후에 공제를 받아 지원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²⁾

셋째,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들에 대해 세액공제의 환급 및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최저한세 제도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¹³⁾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주더라도 세부담 형평성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54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3)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도권 외에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